

광주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4나731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4나7312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2가단55100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 담당변호사 서성원, 서민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채열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용수

변론 종결 2024. 9. 25.

판결 선고 2024. 10. 16.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2가단55100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2. 7.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22. 7. 21. 접수 제957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각 "이 법원"을 모두 "제1심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연경

판사남수진

판사이미주

별지